

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5년 9월 16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수리업체 지정시 지역을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 위반 소지를 없애고 지역과 상관없이 수요자가 원하는 수리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며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개정에 따른 “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” 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휠체어 등 수리업체 지정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 조항 삭제 (제3조제1항)
 - 수리업체 지정 기준 중 “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와 지정·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” 를 “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수리업체를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”로 변경
-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서식 개정 (별지 제2호 서식)
 - 【별지 제2호 서식】 “주민등록번호 기재란”을 “생년월일 기재란”으로 변경

3. 의견제출

-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:사회복지과장, 주소: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(예관동), 문의전화:3396-5374, FAX:3396-8734, 메일:stoptj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- 첨부 : 1.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고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)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수리업체를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연번: 동명 연-월						
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						
장애인	성명		생년월일		성별	남·여
	주소			전화번호		
	장애명			장애등급	급	
수급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수급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차상위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					
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	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휠체어 <input type="checkbox"/> 전동휠체어 <input type="checkbox"/> 전동스쿠터 ※해당 유형에 체크						
비고						
<p>「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확인자 : 동 주민센터 담당 (서명 또는 인)</p> <p>(○ ○ 수리업체장) 귀하</p>						

신 · 구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 (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) ①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와 지정·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(이하 "구"라 한다)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.	제3조 (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) ①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수리업체를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현 행

개 정 안

(별지 제2호서식)

(별지 제2호서식)

연번: 동명 08-01~

연번: 동명 연-월

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

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

장애 인	성 명		주민등록번호		성별	남·여
	주 소			전 화 번 호		
	장 애 명		장 애 등 급		급	

장애 인	성 명		생년월일		성별	남·여
	주 소			전 화 번 호		
	장 애 명		장 애 등 급		급	

수 급 유 형 수급자 차상위 일반

수 급 유 형 수급자 차상위 일반

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

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

휠체어
 전동휠체어
 전동스쿠터
**※해당 유형에
 체크**

휠체어
 전동휠체어
 전동스쿠터
**※해당 유형에
 체크**

비고

비고

「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확인자 : 동 주민센터
 담당 (서명 또는 인)

확인자 : 동 주민센터
 담당 (서명 또는 인)

(○ ○ 수리업체장) 귀하

(○ ○ 수리업체장) 귀하